

재입학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시행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재입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차)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 신청원서 1부
2. 재입학 사유서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제3조(선별 및 허가) ① 재입학의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등록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 선별하며, 등록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별한다. (개정 2019.08.29.)

1. 미등록 제적자
2. 미복학 제적자
3. 자퇴자
4. 학사(성적)경고 제적자

② 재입학은 소정의 신청 기간 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재학년한 내에 졸업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④ 제적당시의 소속 학과(학과군, 학부 및 전공. 이하 같다)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야간학부에서 주간학부로 또는 단순히 학부 명칭만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제4조(학적) ① 재입학을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후 제적당시의 학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일자에 소정의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적을 취득한다.

②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의 학적에 대하여는 제적당시의 학적등재 사항을 승계하여 적용한다.

2-1-10~2 제2편 학 칙

③재입학한 자의 제적에 관한 사항은 재입학 이후를 기준으로 학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5조(재입학금과 등록금) 재입학금은 당해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으로 하고, 재입학자의 등록금은 재입학년도의 소속학과 학년의 등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취소)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재입학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재입학의 허가를 취소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